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4호

발행일: 2022. 5. 9. (월)

제396회 국회(임시회, 2022. 4. 30. ~ 2022. 5. 2.) /

제397회 국회(임시회, 2022. 5. 3.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6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와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소위 ‘검수완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습니다.

제396회 국회 본회의 및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양 법안의 목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

개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한차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골자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5월 3일 본회의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동 기관을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며,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p>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p> <p>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2항 신설).</p> <p>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신설).</p> <p>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제4항 신설).</p> <p>마.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p>	2022-04-30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2022-05-03 (수정가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 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8조 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 경찰청 · 감사원 · 국정원)

과제목표

공수처 설치, 검 · 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주요 내용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찰인사 중립성 · 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 · 개정하고 '21년 시범 실시를 거쳐 '22년 전면 실시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21년도 주요성과(법무부)

총평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검찰 인사 및 징계 제도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권력 기관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향후 주요 사건에 대해 긴밀한 검·경 상호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필요

주요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21.1월)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및 국가 투명성 제고
-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입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시행('21. 1월)
 - * △검·경수사의 기본 원칙(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 및 12시간 초과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및 '보완수사' 요구 등
 - 개정 형사소송법의 신설 제도 등을 반영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정('21. 1월)
 -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시,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청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5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수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 「검찰 직접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21. 3월) 및 개정('21. 6월)
 - * '별건범죄' 발견 시 소속청 '인권보호관'의 검토와 검사장 승인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본건범죄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당하여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 도모
 -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 제정(안) 마련('21. 6월)
 - 검찰구성원 인권감수성 제고 위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전담 검사 및 수사관' 및 '북한이탈주민 전담 검사' 대상 특화된 인권교육 실시('21. 4~7월)
- 검찰 기능 재편을 통해 검찰인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 개정 「검사징계법」 시행('21. 1월)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 * 전체 9명 중 5명(기존 3명)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하여 검사징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법무부의 탈검찰화 강화(검사보임 71개 직위 중 39개를 외부전문가로 임용, 검사파견 축소(40개 기관 64명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3개 기관 46명, '21. 12월 기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별 맞춤형 치안행정 제공,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수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 7월)에 앞서, △시·도별 조례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범운영 실시('21. 1~6월) 등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
-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 「인권경찰 개혁 로드맵」 발표('21. 6월), 전체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 설치('21. 7월) 등 인권친화적인 경찰상 확립
 -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및 고충 확인을 위한 '유치장 피의자 면담제' 시행('21. 7월)
- 경찰 현장 대응·법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개정·시행('21. 1월)을 통해 채증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및 참가자 기본권 보장
 - * (채증 범위) 범피행위 중 또는 직후 가능하도록 구체화
(목적·한계) 범죄수사 목적으로 채증하며,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실시
(채증 고지) 최초 채증 및 매 20분마다 채증 사실 고지

'21년도 주요성과(법무부)

<정부 출범('17.5월~) 이후 핵심 성과>

- **검·경 수사권 견제와 균형 기반 마련**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 1월) 및 개정('20. 12월)
 -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20. 1월) 및 하위법령 제·개정('20. 10월)
- **민생·법치 중심의 검·경 조직 혁신**
 - * (경찰) 검찰 징계 수준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 「검사징계법」 개정('19. 4월),公安부 폐지('19. 8월), 특수부 축소('19. 10월), 직접수사 부서(13개)를 민생 중심의 형사·공판부로 전환('20. 1월, 9월), 법무부 탈검찰화 강화 및 검사파견 축소 등
 - * (경찰) 불법사찰 금지, 정보활동범위 제한을 담은 「정보경찰활동규칙」 제정('19. 1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국가수사본부로 규정한 경찰법 개정('20. 12월)
- **검·경 수사 관행 개혁 등 인권 개선 노력**
 - * (경찰) 인권감독관 전국 검찰청 전면 배치('19. 9월), 「피의자 인권개선방안」 시행('19. 9월)
 - 피의사실공표·공개소환·포토라인 폐지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제정('19. 10월)
 -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별건수사 원칙적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19. 10월)
 - 사건 관계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20. 1월, 9월)
 - * (경찰) 집회·시위시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17. 6월)
 -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18. 6월), 대화경찰관 투입('18. 8월)
 - 경찰 수사 시 변호인 참여 확대('18. 6월), 자기변호노트 도입('18. 6월), 검거·호송 단계에서 뒷수갑 사용 제한('19. 1월),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19. 11월)
 - 인권보호 원칙,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등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20. 6월)
- **감사원과 국정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 국정원, 국내정보업무 폐지 등 조직개편('17. 6월)
 - * 감사 사각지대였던 대통령비서실, 대검, 국정원에 기관운영감사 최초 실시('18. 3·6·12월)
 - *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 정치적 중립 운영원칙을 규정한 「국정원법」 개정('20. 12월)

참고 자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7.

이수진 의원안: 검사의 수사권한 배제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 3.

민형배 의원안: 검사의 수사권한 삭제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0. 8. 25.

[국가수사본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2. 1. 11.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법무부 누리집 「법무뉴스」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12. 18.

이 연구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다음은 신설하는 공수처의 기능적 한계를 분석하고 단기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독립수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검찰청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12.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 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 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6. 18.

-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쟁점을 분석
 -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는 논의에 대하여 경찰권 분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력기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경찰수사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경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찰의 정보권과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하여 경찰권 남용의 우려도 있음
- 국가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할 취지라면,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을 행정경찰조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사사무를 견제하는 외부장치의 확보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20. 봄

개정법에서 제시된 검·경 수사권조정의 내용으로는, 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② 경찰에게 불송치처분의 권한을 인정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③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④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을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검·경 사이에 협력적 수사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되는 제안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복잡하게 변경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이 약화되어 비대해진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 및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법에 나타난 쟁점을 크게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원칙적 폐지, 불송치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과 정책」 2018. 8.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형태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바라본 검·경 수사권의 의미와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7. 10.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입법정책 현안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개혁’ 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명명되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주고 있다. 수사권 문제는 형사절차의 일부라는 본래의 위치에 맞추어 정부 조정안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수사권 문제를 조망하여 본다.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7. 2. 3.

- 1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발제자 하태훈 교수(고려대)
- 2주제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
발제자 김인회 교수(인하대)
- 3주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발제자 정웅석 교수(서경대)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